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83563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섭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4. 28.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39,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7.부터 2022.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1,524,3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0. 4. 30.경 피고에게 파주시 D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20. 10. 30.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은행권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본 계약금액은 공사비 7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6개월 동안의 이 사건 대출 금융이자 44,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공사 중 이자는 수급인이 납부한다-추후정산조건). 단 별첨 공정표 대비 공사 지연시 추가이자 수급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위 이자를 원고가 납부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700,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 이후의 이자명목으로 2020. 11. 9.에 1,251,000원, 2020. 12. 8.에 4,612,770원, 2020. 12. 31.에 3,228,940원, 2021. 1. 8.에 1,646,870원 합계 10,739,58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1. 2. 8.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2021. 1.분 이자 3,790,92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2. 1.경 파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공사 미시공 및 시공부분에 대한 하자 등으로 56,252,1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2021. 1.분 이자를 대납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전기료와 가스비를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 내지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2.부터 2021. 1.까지 4건의 펜스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30,956,442원을 미지급받았다.

나. 판단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이자 등 대납액 반환 청구

가)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준공예정일 이후 이 사건 대출에 대한 2021. 1.분 이자 3,790,92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하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외벽 외부전등 미시공, 외부 잔디 부설시공, 주차장 바닥 점토블록 부설시공으로 인한 침하, 지하1층 발코니, 지상3층 테라스 바닥 방수 부설시공, 지하 1, 2층 바닥 몰탈 부설시공으로 인한 균열 및 요철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56,252,180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 전 발생한 전기료 75,860원, 도시가스비 448,92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56,252,180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준공예정일 이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이자 중 원고가 대납한 이자 3,790,920원, 원고가 대납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전기료 75,860원, 도시가스비 448,920원 합계 60,567,880원(= 56,252,180원 + 3,790,920원 + 75,860원 + 448,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시공 부분은 최초 계약도면에 없는 것이므로 미시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원고의 강압적인 설계변경으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이므로, 피고는 준공일 연장에 따라 발생한 이자, 전기료, 가스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부담한 이자 10,739,58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3,328,186원을 미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구하는 취지로 선행하여 판단컨대,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2020. 3. 17.에 1,000,000원, 2020. 5. 8.에 9,000,000원, 2020. 6. 4.에 208,528,197원, 2020. 6. 22.에 69,336,000원, 2020. 7. 3.에 67,825,888원, 2020. 7. 30.에 81,435,161원, 2020. 9. 28.에 149,567,273원, 2020. 11. 3.에 34,219,127원, 2020. 12. 29.에 68,873,168원을 각 지급하고, 2020. 6. 29. 피고로부터 기성 1차 오류 지급분 3,113,000원 반환받아 총 686,671,814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13,328,186원(= 700,000,000원 - 686,671,8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56,252,180원과 상계할 수 있다.

나아가 상계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준공일인 2021. 1.경이 이행기이고,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도 마찬가지로 준공일인 2021. 1.경이 이행기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상계의 의사표시로 선행)가 기재된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21. 1.경에 소급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고, 결국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42,923,994원(= 56,252,180원 - 13,328,186원)만 남게 된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후 남은 손해배상금 42,923,994원, 원고가 대납한 이자 3,790,920원, 전기료 75,860원, 도시가스비 448,920원 합계 47,239,694원(= 42,923,994원 + 3,790,920원 + 75,860원 + 448,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완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2.부터 2021. 1.까지 4건의 펜스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30,956,442원을 미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갑 제8호증(전자세금계산서)을 제출하였으나, 위 세금계산서만으로는 공사계약의 내용, 실제 수행한 공사의 내역과 시공량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연수